

수입허가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14일			
신청인	성명	사업자등록번호				
	업체명	(전화번호:)				
	소재지					
내용	수출국	품명(학명)	중량(kg)	수송방법	도착항	도착예정일
수입목적						
용도						
관리방법			관리장소			
사용기간			사용 후 처리방법			
관리책임자	성명	직책		주요임무		
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의15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16제1항에 따라 시험·연구조사 또는 야생동물 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수입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귀하

첨부서류	1. 시험·연구조사 또는 의약품의 제조 계획서 2. 시설·장비 및 전문인력 확보 현황 3. 연구계획서 또는 사용계획서 4. 안전관리계획서 5. 그 밖에 수입허가와 관련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작성요령

- ① 신청인: 해당 야생동물 또는 물건의 수입허가를 신청하는 자의 성명, 상호,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적습니다.
- ② 내용: 수출국가, 품명(학명), 종량, 수송방법(선박, 비행기 등), 도착항(국내도착항) 등을 적습니다.
- ③ 수입목적: 수입목적 등을 적습니다.
- ④ 용도: 시험·연구조사, 야생동물 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 등 용도를 적습니다.
- ⑤ 관리방법: 해당 야생동물 또는 물건의 관리방법을 적습니다.
- ⑥ 관리장소: 해당 야생동물 또는 물건의 관리장소를 적습니다.
- ⑦ 사용기간: 해당 야생동물 또는 물건의 사용기간을 적습니다.
- ⑧ 사용 후 처리방법: 해당 야생동물 또는 물건의 사용 후 처리방법(소각·매몰 등)을 적습니다.
- ⑨ 관리책임자: 관리책임자의 성명, 직책, 주요임무를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